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967
----------	------

제출년월일 : 2010. 2./0.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 녹색성장 시대의 중요한 기능인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함

주요골자

대중교통과의 주요 업무에 대한 심의기능 및 각 조례에 산재되어 있는 위원회의 기능을 흡수하여 운영하기 위한

- 가. 위원회의 심의(자문)내용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다. 위원회 위원의 해촉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위원회 소집 및 위원회 회의 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마.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조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바. 위원의 참석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10조)

제정조례안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안산시교통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 「안산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
-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제8조

예산수반사항 : 3,360천원

- 참석수당 : 80,000원 × 7명 × 6회 = 3,360,000원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문제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산시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관한사항
 5. 택시면허에 관한사항
 6. 대중교통시설의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 12. 31.까지로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인사, 시의회의원, 운수업체관계자, 교통관련 외부전문가, 공무원, 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관련 직위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기관·단체의 관련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질병, 장기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계속적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집합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 소속 관계부서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관계부서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산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②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제8조 중 제5호, 제6호 및 제7호를 삭제한다.

소관 실·과		대중교통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대중교통과 박 미 라
	담당·팀장 직위·성명	버스담당 임 종 현
	담당자 성명·전화	오 용 철 (행정 2955)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967
----------	------

제안년월일 : 2010. 02. 26.
제안자 : 도시건설위원장

1. 수정 이유

- 대중교통발전위원회의 기능 중 안산시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대중교통발전위원회에서 안산시 대중교통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수정함(안 제2조)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중 “안산시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을 “안산시 대중교
통계획 수립”으로 한다.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p>제2조(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안산시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p> <p>2. ~7. (생략)</p> <p>② (생략)</p>	<p>제2조(설치) ① -----</p> <p>-----</p> <p>-----</p> <p>1. 안산시 대중교통계획 수립-----</p> <p>-----</p> <p>2. ~7. (원안과 같음)</p> <p>② (원안과 같음)</p>